

2016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 2016. 4. 26.(화) 오후2시~5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  
주 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광주광역시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사법기관에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 및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부여, 2014년 정당한 편의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추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15. 11.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 상황을 조망하고, 그 동안의 장애차별시정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향후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는 장애차별 사건조사 권한을 인권사무소로 이관하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사안들에 대해 좀 더 잘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경 속**

- 일 시 : 2016년 4월 2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실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 및 축사	14:00~14:05	❖ 개회선언 · 이용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14:05~14:20	❖ 축사 ·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문 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김대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

좌장: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

발표	14:30~14:50	[발표1]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한계 황현철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14:50~15:10	[발표2] 장애인 교육권 차별 진정사례 및 개선방향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15:10~15:25	[발표3] 장애인 교육관련 차별사례 및 개선의견 · 유·초·중등 교육 중심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중심 류니니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정보접근권 중심 김동복 (도서출판 점자 대표, 前 광주세광학교 교사)
	15:25~15:40	
	15:40~15:55	
15:55~16:15	[제 언]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및 폐회	16:15~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 ◆ 발표 1
  -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한계 ..... 1  
 황현철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 ◆ 발표 2
  - 장애인 교육권 차별 진정사례 및 개선방향 ..... 15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 발표 3
  - 장애인 교육관련 차별사례 및 개선의견 ..... 41
    - 유·초·중등 교육 중심
      -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43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중심
      - 류니니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 53
      -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 57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정보접근권 중심
      - 김동복 (도서출판 접자 대표, 前 광주세광학교 교사) ..... 69
- ◆ 제언
  -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 79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부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7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1

##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한계

황현철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의 현황 및 한계 - 광주광역시 장애인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

황헌철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10여년 전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부모대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부모님 모두가 자녀에 대한 교육부분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었다. 입학과정, 학업과정, 졸업후 과정,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과의 다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갈등, 특수교사와 (비)장애학생 부모님과의 갈등, 특수교사/장애학생 부모와 학교 상급자와의 갈등, 비장애학생 부모님과의 갈등,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의 갈등, 보조공학기계 지원, 편의시설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학교생활을 연장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을 12세 까지 연장하여 다니기도 하고, 유예신청을 통해 초·중·고를 늦게 보내기도 하고, 전공과에 입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시행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시행되지 않고 권고나 합의 등 개별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라며 이 글에서는 광주지역 장애인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장애인교육관련 법적 환경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지원근거로는 <표 1>과 같이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표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 조항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7조(전공과의 설치),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장 제20조(교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년 3월 기준)

## 2. 특수교육의 정의와 대상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뜻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 4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이다.

### 3. 전국 특수교육 현황

특수학교수 및 특수학급수 변화 추이를 보면 '15년에 특수학교 1개교가 신설되었으며, 특수학급은 2014년 9,617학급에서 2015년 9,868학급으로 251학급이 증설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415학급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15년 특수교육대상자는 88,067명으로 '14년보다 789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수교육 지원내용으로는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치료지원 제공,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등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이다

'15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4.8명으로 '11년 5.2:1 → '12년 5.1:1 → '13년 5.0:1 → '14년 4.9:1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12개교	15개교	113개교	20개교	7개교	167개교

출처 : '2015년 특수교육통계' 참조(교육부, 2016)

〈표 3〉 2015년 특수교육 현황

배치별	특수 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 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수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생 수	장애 영역 별	시각장애	1,353	291	435	9	2,088
		청각장애	952	765	1,752	22	3,491
		정신지체	14,891	28,744	4,001	80	47,716
		지체장애	3,707	4,246	3,010	171	11,134
		정서행동장애	199	1,624	707	-	2,530
		자폐성장애	4,000	5,363	675	7	10,045
		의사소통장애	85	997	961	2	2,045
		학습장애	13	1,891	866	-	2,770
		건강장애	48	238	1,649	-	1,935
		발달지체	283	2,192	1,566	272	4,313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179	-	-	563	742
		유치원	883	2,039	1,822	-	4,744
		초등학교	6,472	20,991	6,128	-	33,591
		중학교	6,142	11,312	3,654	-	21,108
		고등학교	7,581	11,823	4,018	-	23,422
		전공과	4,274	186	-	-	4,460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 및 센터 수	167	7,397	6,972	196	10,908	
		10,528					
학급 수	4,454	9,868	(14,580)	61	28,963		
특수학교(급)교원 수	7,863	10,185	-	291	18,339		
특수교육 보조 인력 수	3,386	6,483	471	-	10,340		

출처 : '2015년 특수교육통계' 참조(교육부, 2016)

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 4. 광주광역시 장애인 교육현황

### 1) 장애인 특수교육 현황

2015년 3월 광주광역시 특수교육현황을 보면 2,784명의 학생이 5개의 특수학교, 202개의 특수학급, 261개의 일반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특수교사 수는 608명으로 전국 평균 4.9명보다 낮은 4.57명이다.

또한 5개의 특수학교 중에 지적장애 학교가 3개교, 지체와 시각장애 학교가 각각 1개교씩 설립되어 있다. 인화학교(청각장애)가 폐교된 후에 선우학교가 대체학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적 및 청각장애 학교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200여명의 학생중에 청각장애 학생은 초·중·고 포함하여 2016년 기준으로 9명만 재학중이다.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이 1,23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은 경증 또는 청각, 언어장애 학생 등이 대부분이다.

〈표 4〉 광주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사 현황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교사 수
특수학교	5개교	184학급	995명	326명
특수학급	202개교	268학급	1,238명	268명
일반학급	261개교	536학급	551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14명
<b>합 계</b>	<b>468개교</b>	<b>988학급</b>	<b>2,784명</b>	<b>608명</b>

출처 : '2015년 특수교육통계' 참조(교육부, 2016)

〈표 5〉 광주광역시 특수학교 현황

학 교 명	설 립	장애영역	학생수(명) 15/16년	학급 수(급) 15/16년						
				영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광주선광	공 립	정신지체	280/279	-	-	14/17	12/13	16/16	4/4	46/50
광주선명	공 립	정신지체	233/236	-	-	10/9	13/10	14/17	4/4	41/40
광주선우	공 립	정신지체	199/198	-	1/1	11/10	8/8	12/11	4/4	36/34
광주세광	사 립	시각장애	108/104	1/	2/1	7/7	4/3	10/9	/2	24/23
은혜학교	사 립	지체장애	175/176	-	-	17/15	10/10	10/10	-	37/35
<b>합 계</b>	-	-	<b>995/1007</b>	<b>1/</b>	<b>3/2</b>	<b>59/58</b>	<b>47/44</b>	<b>62/63</b>	<b>12/14</b>	<b>184/182</b>

출처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2016년 3월 기준)

직접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 인력으로는 특수교육 실무사, 통학차량 실무사,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코디네이터, 사회복지무원 등 300여명이 지원하고 있다.

〈표 6〉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구분	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합계
특수교육실무사	-	49	148	6	203
통학차량실무사	-	20	-	-	20
유치원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사	-	8	4	-	12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4	-	-	-	4
특수교육 거점 코디네이터	-	1	1	-	2
사회복지무원	2		54	-	56
<b>합계</b>	<b>6</b>	<b>78</b>	<b>207</b>	<b>6</b>	<b>297</b>

출처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2016년 3월 기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전공과 진학, 대학진학, 취업 등으로 진로가 결정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4개 학교에 전공과가 개설되어 대부분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공과 과정이 조립, 도예, 제과제빵 등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표 8〉 광주광역시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

학 교 명	장애영역	학생수	과정
광주선광	지적장애	42	포장조립, 도예, 제과제빵, 비누, 원예, 바리스타
광주선명	지적장애	43	포장조립, 도예, 제과제빵, 서비스
광주선우	지적장애	44	포장조립, 도예, 제과제빵, 서비스, 작업준비
광주세광	시각	14	이료, 직업재활

출처 : 선광학교, 선명학교, 선우학교, 세광학교 홈페이지 참조 (2016년 3월 기준)  
 ※ 2016. 2. 3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용어에 따라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수정함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 전공과와 대학 진학이 38%, 취업자는 11%에 불과하였고 51% 정도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특수학급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특수학교보다 더 높았고 일반학급 졸업생 60%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중복 또는 중증 장애인 학생들로 상대적으로 졸업 후 다양한 직업 선택에 대한 한계와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0〉과 같이 전공과를 이수한 학생들의 30%만이 취업을 하고 있어 실제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9〉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분류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미진학 미취업자 수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소 계		
특수학교	117	26	5	14	45	13	59
특수학급	98	37	10	7	54	15	29
일반학급	30	-	5	13	18	-	12

출처 : ‘2015년 특수교육통계’ 참조(교육부, 2016)

〈표 10〉 전공과 이수자 진학·취업 현황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소 계	보건	제조	청소	식음료	사서보조	기타	소 계	비율
65명	-	5	4	2	4	1	5명	21명	32.3%

출처 : ‘2015년 특수교육통계’ 참조(교육부, 2016)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현재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동부·서부 교육지원청 각 1개소). 주요기능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개별화교육 관련 지원,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지원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감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상담</li> <li>•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li> <li>• 진단, 평가, 배치</li> <li>• 대상자 정보 이력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교육 관련 지원</li> <li>• 순회교육 지원</li> <li>• 순회 직업교육 관련 지원</li> <li>• 직업 전환교육지원실 운영</li> <li>•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지원</li> <li>• 통학편의 지원</li> <li>• 방과후학교 지원</li> <li>• 장애학생 가족 지원</li> <li>• 특수교육 교재교구 등 지원</li> <li>•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li> <li>• 장애인식개선 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li> <li>• 전문가 및 자원 봉사 인력풀 운영</li> <li>• 홈페이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운영</li> <li>• 감각중복장애 순회교육 실시</li> <li>• 특수교육 교재교구 구입, 대여</li> <li>•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li> <li>• 보조공학기기 활용 교육</li> </ul>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2016. 3)

둘째,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지원이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각종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보조인력의 지원 등이다.

그 외 장애학생 관련 지원 내용으로는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무상교육,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특수학교(급)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교실, 방과후학

교, 토요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등이 있다.

## 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평생교육사-1명, 사무국-1명), 임대료, 관리비, 사업비 등이며, 주요역할로는 성인 장애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등이다.

〈표 12〉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성인(야학) 지원 현황

설립형태, 기관 수	교사 수	학생 수	프로그램 수	지원예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7명	79명	50개 (문해-38, 교양-2, 직업-2 기타-8)	205백만원

출처 :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참조(교육부, 2016년)

## 5. 논의점

첫째,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는 다르게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근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20%가 전공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학교일 경우에는 4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고 3 정도에서만 입시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교 유형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전공과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대부분 2년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과를 졸업 후 직업을 갖는 경우는 32%에 불과하였다. 전공과가 단순히 장애학생을 2년 정도 보호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업준비를 위한 과정 또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지 그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몇몇 학교를 제외한 지적장애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유사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별화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일반학교에 없는 직업교사 또는 이료교사가 전국적으로 260여명이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직업교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맞추어진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직업기술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전문성 확보이다. 특히 특수교육실무사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채용 시 단순히 국어와 상식 두 과목만으로 평가하여 채용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개인별 특성들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과 부모님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중증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경증장애학생은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으로 진학한다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사회통합, 통합교육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지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급수로 따져 입학과 학습 기능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개인별 학습능력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입학과 학업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돌아가고 있다(졸업생의 50%). 새로운 직장 또는 사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 후 21세까지 또는 졸업 후 3년 동안 학교에서 구체적인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졸업생의 사회진출 이후의 사회생활 상태 평가가 장애유형이나 정도, 주거, 직업 유무 등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변화 추이에 따라 적절한 사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과 사이트

교육부(2016),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2016), 2015년 특수교육통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sesc.gen.go.kr](http://sesc.gen.go.kr)

광주선광학교 <http://www.sunkwang.sc.kr>

광주선명학교 <http://www.sunmyong.sc.kr/>

광주선우학교 <http://www.seonu.sc.kr>

광주세광학교 <http://www.sekwang.sc.kr>

은혜학교 <http://www.eunhae.sc.kr>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2

## 장애인 교육권 차별 진정사례 및 개선방향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장애인 교육권 차별 진정사례 및 개선방향

김익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1. 시작하며 (머리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이웃과 동등한 인격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세우도록 하는데 있다(이현수, 2011).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일하고, 생계수단을 얻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적 권리이며 기본적 권리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장애인의 노동, 자립생활, 그리고 참정권과 문화예술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와 연결된다. 팬츠는 수입을 위하여 양질의 생산적 노동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교육 격차야말로 더욱 심각한 차별의 원인이 된다(김용목, 2015).

장애인의 교육 또한 비장애인의 교육목적과 다르지 않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하여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직업생활(노동),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주고,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체적 정신적 지적 훈련을 통하여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권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초적인 권리이다 (이현수, 2011)

이번 발제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차별행위와 학교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관련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과 권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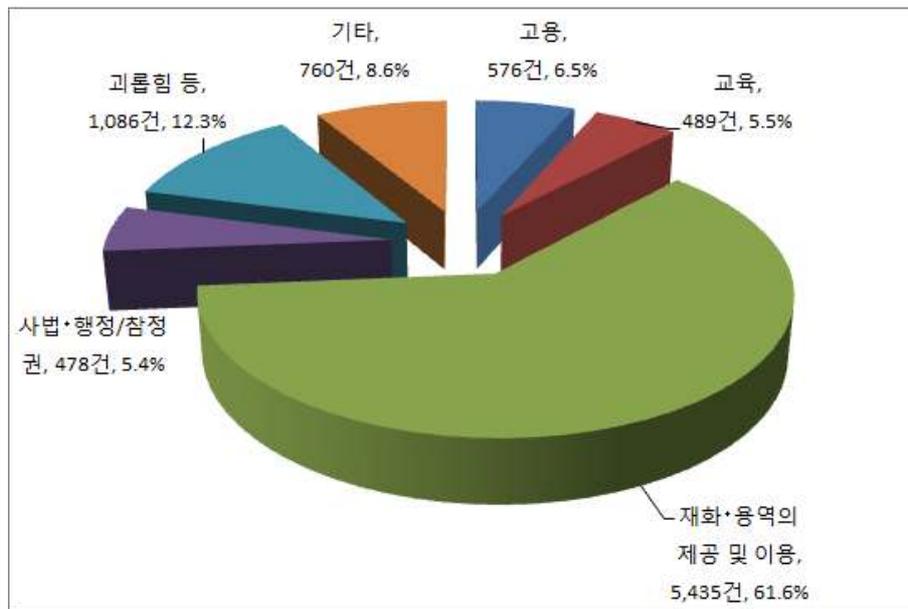
## 2.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유형 분석

### 가.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8,824	576	489	5,435	1,313	627	1,147	643	1,400	305	478	1,086	760
	비율	100.0	6.5	5.5	61.6	14.9	7.1	13.0	7.3	15.9	3.5	5.4	12.3	8.6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5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6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6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	8.2	5.7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2	69	55	729	126	82	124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3.8	11.0	7.2	10.9	8.7	25.0	1.1	3.2	10.6	11.5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의 연도별 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정사건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1,600건대로 증가하였다가 최근까지는 진정사건 접수는 1,1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 비중도 2008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교육영역을 줄어든 대신 재화 용역의 제공 영역과 괴롭힘 영역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분야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별진정이 2008년에 6.0%에서 2013년 23.4% 2015년에 25.0%까지 진정사건 접수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에서 교육시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이 제정·시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기대와 개별지원계획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1]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 나. 장애종류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8,824	2773	1963	640	1044	1044	66	362	932	
고용	576	206	57	49	94	43	10	34	83	
교육	489	68	78	51	55	166	4	11	56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이용	재화·용역 일반	1,313	451	232	153	91	210	11	53	112
	보험·금융	627	149	104	61	115	98	7	52	41
	시설물 접근	1,147	795	171	62	16	13	1	3	86
	이동 및 교통수단	643	339	106	48	20	35	4	2	89
	정보통신·의사소통	1,400	33	900	17	317	26	4	1	102
	문화·예술·체육	305	60	24	16	58	118	-	7	22
사법·행정	331	68	78	14	39	69	4	17	42	
참정권	147	55	26	2	3	4	-	2	55	
괴롭힘 등	1,086	279	64	106	202	196	12	128	99	
기타	760	270	123	61	34	66	9	52	145	

장애종류별로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 보면, 교육시설 영역에서 가장 많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는 장애종류로는 전체 489건중 지적발달장애인으로 166건(34%)이 접수되었다. 특히 교육영역에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정신장애인(35.4%), 청각장애인(19.4%), 지적발달 장애인(18.8%) 그리고 뇌병변장애인(16.6%)에 대한 괴롭힘 비중이 다른 장애종류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교육 영역에서 차별유형별 진정접수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489	68	52	92	39	85	32	121
	비율	100.0	13.9	10.6	18.8	8.0	17.4	6.5	24.7
	공공	334	29	28	46	28	82	26	95
	민간	155	39	24	46	11	3	6	26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수업 및 시험평가에  
서의 편의 미제공과 특수학급 미설치이다. 이중 특수학급 미설치는 학교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정책적인 분야로서 2012년 진정사건 접수가 53.1%까지 가장 높았으나 2015년 현재 5.5%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전입학 거부나 시설물 접근이나 이용의 영역은 매  
년 진정사건 접수가 줄어들어 비하여 수업 및 시험평가에서 편의 미제공이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괴롭힘 분야에서 진정사건 발생 빈도가 2008년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8년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라. 장애인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5.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합계	건수	8,367	4,135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비율(%)	100.0	100.0	67.8				32.2			
				49.4					49.9	0.2	0.5
고용	건수	554	189	11	-	37	21	120	360 (284)	4	1
	비율(%)	100.0	100.0	36.5				63.5			
				34.1					65.0	0.7	0.2
교육	건수	471	216	12	-	35	119	51	251 (211)	-	3
	비율(%)	100.0	100.0	76.5				23.6			
				46.1					53.3	-	0.6
재화· 용역	건수	5,114	2,969	285	2	174	1,727	781	2,131 (1,581)	9	5
	비율(%)	100.0	100.0	73.7				26.3			
				58.1					41.7	0.2	0.1
사법· 행정 /참정권	건수	465	237	23	-	4	140	70	227 (149)	-	1
	비율(%)	100.0	100.0	70.5				29.5			
				51.0					48.8	-	0.2
괴롭힘 등	건수	1,763	523	22	-	75	115	311	1,209 (690)	3	28
	비율(%)	100.0	100.0	40.5				59.4			
				29.7					68.5	0.2	1.6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재화 용역과 사법 행정 영역에서 조사대상 비율이 높은 반면에 고용, 교육과 괴롭힘 영역에서 진정제기이후에 진정을 취하하거나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종결되는 비율이 높다. 다만 교육영역에서는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합이나 조사과정에서 다소 높은 권리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괴롭힘의 경우에는 취하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하여도 권리구제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장애종류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과정에서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3. 인권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례

#### 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 1)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10-진정-0710700)

###### - 진정요지

피해자는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의 아들로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 같은 반 학생 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 8. 진정인이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등교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는 수업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다.

###### -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담임교사로서 교육과정에서 담당학급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특수교사 등과 협력하여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에의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된 것이다. 피해자에게 등교를 하지 말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6조(피해학생의 보

호), 제17조(기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두 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면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학급 동료들 및 교사들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 결론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권고(수용)

- 1)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2)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 2)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14-진정-0309200)

##### -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17세,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중복장애 1급)으로 2014. 3. 7.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3. 14.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 - 판단요지

조사결과, 피진정인C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였다. 피진정인D는 피진정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입회한 피진정인 E에게 다른 업무를 주고 상담실을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피진정인 D의 질문은 적절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E는 장애인 특수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피진정인 D의 다른 부탁을 듣고 다른 목격학생을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피진정인 D의 조력인에 그쳤다. 피진정인 A과 피진정인 B는 학교 장과 교감으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권고(수용)**

- 1) ○○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2) 교육부장관 및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

**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 장애특례 전혀 필기시험시 장애인 차별 등(13-진정-787500)**

**- 진정요지**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예술고등학교 첼로 전공에 지원하였는데 피진정인 A은 일반전형과 달리 해당 악기의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고 학내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 판단요지**

조사결과, 피진정인 A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함에 있어서 악기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예술능력'보다는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러한 심사절차가 장애학생이 소수 또는 한명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들었

으나 이는 피진정인A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A이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을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권고(수용)**

- 1) ○○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2)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국어능력인정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12-진정-0519200)**

**-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2012년 5월에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정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2교시 쓰기 시험의 경우 문제의 반 정도를 100자에서 300자까지의 답안을 써야 한다. 뇌병변 장애가 있다 보니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 등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 판단요지**

국어능력인정시험에서 글씨를 쓰는 것에서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시간 연장' 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며, 피진정인이 추계한 바에 따르더라도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권고(수용)**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정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 조치를 제공할 것

## 다. 교육시설에서의 괴롭힘

### 1)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13-진정-0177400)

#### -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A(○○초등학교 특수교사)은 간질환자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폭행 및 폭언을 하였으며, 2012. 6. 15. 현대미술관 현장학습 시 폭행하였으며, 2012. 9. 6. 피해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하였으며,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멍들도록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지도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폭언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되었다.

#### - 판단 요지

##### 1) 진정요지 가항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되도록 피진정인A가 때린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A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진정인이 목격한 당시 특수학급에는 피진정인A와 피해자만 있었던 점, 당일 피해자가 진정인에게 “도움반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다른 애들 없을 때 때렸어요.”라고 얘기한 점, 진정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눈 주위가 빨갱게 멍들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학생이고 현재 10세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A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조사관에게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본인의 부에게 “학교에서 도움반 선생님에게 맞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얘기한 점, ○○시로 전학 간 참고인C가 “D와 E형이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A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A는 학생들이 수업 중 주의집중을 하지 않을 때 가볍게 책상을 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여기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진정인A의 억압적으로 말해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진술한 점, 통합학급교사 등 참고인 다수가 피진정인 A가 평소 장애학생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A가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아냥대거나 함부로 말하여 함께 있었던 특수교육보조원들 조차 같이 생활하면서 듣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 B는 피진정인A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시장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고발된 당사자 피진정인A과 개별면담만을 실시하고 내부 관계자나 장애학생의 학부모 등과는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 장애학생에 대해 폭행 행위가 보고되었을 때 심각한 정도로 보아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교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5조 학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 권고(수용)

- 1)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2) ○○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A를 징계할 것, 피진정인B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2)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발달장애 아동 비하 발언 등(13-진정-081400)

### - 진정요지

- 1) 피해자 노□□에 대하여 2013. 3월 중순경 피해자가 학교 교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걸레질 하면서, 피진정인은 “내가 이런 거 치우려고 이 학교 왔나 미친놈 꼴도 보기 싫다”고 하였다. 2013. 3월 말경과 4월 초순경의 사이에 “소변 못 가리고 먹는 것만 꾸역꾸역 잘 먹어댄다”고 하였다. 그리고 4월 초순경 피해자가 학교 뒷산 등산 시 올라가지 않고 멈췄다는 이유로 죽비로 엉덩이와 등을 두어 차례 때리면서 “등산 시에는 무조건 죽비 챙겨야 한다”고 하였다.
- 2) 피해자 강□□에 대하여 2013. 3. 중순경 피해자가 교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병신 같다”, “정말 싫다”, “쳐다보기 싫다”고 하였다.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피해자가 혼잣말로 우는 듯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개”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4월 중순경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빼앗고, 손목을 비틀어 꺾어 올렸다.
- 3) 피해자 엄○○에 대하여, 2013. 3월 중순경 피해자의 대소변을 보조할 때 “더럽다, 짜증난다”고 하였다.

**- 판단 요지**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2013. 3월경 피해자 노○○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피해자 엄○○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행위는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면전에 두고 모욕감을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참고인들에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권고(수용)**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라. 장애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 괴롭힘**

**1)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11-진정-0440300)**

**-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장애아동시설의 재활교사들이고, 피해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시설장인 피진정인은 피해자 황○○ 등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하고 있다.

**- 판단요지**

1) 조사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 황○○의 뺨을 때린 사실, 피해자 이○○의 뺨과 엉덩이를 때린 사실, 피해자 최○○의 엉덩이 등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 피해자 강○○의 손바닥 등을 회초리로 때린 사실, 피해자 지○○의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 피해자 안○○의 뺨과 엉덩이를 때린 사실, 피해자 전○○의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 피해자 박○○의 손바닥과 뺨을 때린 사실, 피해자 안□□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 피해자 이○○의 엉덩

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 피해자 박○○과 피해자 강□□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

- 2)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 황○○에게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 피해자 이○○을 장시간 비에 젖게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벌을 서게 한 사실, 피해자 강○○를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 피해자 안○○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 피해자 전○○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벌을 서게 하고 성인 생활시설로 장기간 보낸 사실, 피해자 박○○를 장기간 벌을 세우고 시설 밖으로 내쫓아 비를 맞게 한 사실, 피해자 이○○를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3)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은 교육 목적으로 체벌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때린 행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벌을 세운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 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력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4) 아울러, 피진정인이 피해자 황○○, 피해자 안○○, 피해자 전○○, 피해자 이○○에게 각각 벌을 세우면서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권고(수용)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3)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4. 교육영역에서 차별행위의 문제점과 한계

### 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시행)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년 5월 시행)이 상호작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와 더불어 시설물 접근이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행위가 많이 감소하였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편의제공은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과 제도의 틀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법의 한계라기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의지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스스로 장애인 교육에서 차별을 방조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예로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4-6-6-7명 이하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에서는 인원을 초과할 때 마다 학급을 증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치로 인하여 구조적인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인력이 전체 정원의 61.1%에 불과 최소한 필요인력이 6,816명이지만 필요한 정원이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반학교의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교사 충원율과 비교할 때 중앙정부가 스스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교육자치의 틀 속에서 지역간 특수교육 여건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경만, 2011)

앞서 제1장의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눈에 드러나는 입학거부, 타학교 전학 중용 등의 직접차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수업 및 시험평가의 편의 미제공,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장애인 및 장애 교육담당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비하 등은 아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차법 제14조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정당한 편의 수단을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책임자이 의지에 따라 아직 불충분한 형편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교육 관련자가 관리자나 교직원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에 학교책임자가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학

생이나 특수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차법 제 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질이 부족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오히려 아동교육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차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교육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나 대학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지만 독립된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없는 학교도 있고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업무와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전병운, 2011).

이는 정부와 학교교육책임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정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임기중에 형식적인 외형만을 갖추면 될 것이라는 임기응변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면 오히려 향후 법의 실효적 이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 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영역에서 차별

제2장의 장애종류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 보면, 교육영역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종류는 지적 발달장애인으로 전체 489건중에서 166건(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3장의 진정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교사 또는 주변 선후배 또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더욱이 인지가 어려워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많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쉽게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은 아동에서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장애의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이 학교와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의 특성상이 교육보조인력이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인력과 도구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 등 교육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발달장애인법이 2015. 11.부터 시행되게 되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와 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장차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 구조적인 차별과 개별적인 차별행위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가 장애를 이유로 한 학대와 유기 등의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차별행위는 발달장애인법 제19조(개별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개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차별행위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학교내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장애인 학생 대상 왕따와 폭력(성폭력 포함), 교사에 의한 비하 발언 또는 폭력(성추행 및 성폭력 포함)등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찌기 아동폭력피해의 위험요인으로 장애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201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학생인 비율이 지난 2009년 1.2%에서 지난해 2010년 1.5%로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위험에 보다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노충래 2002, 이주희 이양희 2000). 장애아동들이 빈번하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폭력수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아동중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폭력을 당하여도 폭력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애아동들이 반복하여 폭력을 당하여도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조사나 대책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2014, 이현수 발제).

흔히들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한일이다’, ‘원인제공은 장애학생이 먼저 우리를 괴롭혔다’, ‘장애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된다’ ‘장애인들은 자기통제를 못하고 돌출적으로 행동하여 위험하였다’ 거기에 ‘장애아동은 학교폭력을 당해도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도 장애가 있으니 잘 모르겠지’라고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의 책임자이며 어른인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장애학생 피해의 폭력사건을 학교의 공동의 과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닌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나 담임선생에게 해당 폭력사건을 해결하도록 일임하고 학교폭력 발생시에 비장애인 아동을 두둔하거나 장애아동의 피해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2014,이현수 발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경쟁식 교육환경과 학교의 수업방식이나 교사들의 교육방침이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 방식이다 보니 교육 현장에 교사 등은 장애학생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이나 간접체벌도 정당화되고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명제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따라서 먼저 학교현장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인력을 확대하고, 초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지원 교육을 통한 돌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2014, 이현수 발제). 그래야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괴롭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게 될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학교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 라. 시설에서의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11일 이후부터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대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각급학교, 보육하는 영유아수가 100명상인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다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 특수학교 뿐 만아니라 일반학급에도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3. 4월 11일 부터는 모든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시설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그 외 1000㎡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100㎡이상의 직업교육훈련시설과 교원연수기관 그리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까지 확대되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애인 교육받을 권리는 근로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의무교육 뿐 만 아니라 졸업이후에도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규 학교 등 교육기관 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 까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자아실현 행복추구)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과 직업훈련이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이나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노동의 생산력을 보다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고용과 교육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고용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인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와 시설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그냥 시설에서 가만히 있도록 하여, 그냥 말만 잘 듣는 장애인으로 유지시키거나 노동력을 퇴보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2015, 정현욱).

현재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상담,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소관 기관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교육 및 훈련 서비스가 중복되고, 이러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각각의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직업능력평가사, 직업훈련교사 등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효과적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자체-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재활시설-고용센터-지역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 및 고용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용목, 2015).

## 마.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점

장차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법률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와 심의가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난 8년간 인권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진정사건 8,824건중 8,367건(94.9%)를 처리하고 약 50%의 각하사건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사건의 4,135건(67.8%)를 권리구제로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공무원, 교사와 학생 시민 그리고 시설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차별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모든 영역에서 2008년의 차별영역별 비율이나 현재 2015년 차별영역의 비율이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영역이나 형태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음을 의미한다.

현재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과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차별행위와 장애를 이유로 함 인권침해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주로 학교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병원 등의 내부의 내부고발자나 증인들의 용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나 증언자,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들이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피진정인들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강력한 벌칙조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 마치며 (맺는말)

지금까지 장차법 시행이후 8년간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행위, 교육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과 관련한 진정사건 권고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영역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행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영역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당국(교육부)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본적으로 보조인력 배치와 다양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유기나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개별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 장애인 개별 지원계획등과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교사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법이 나 아동복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나 시설의 관리자나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평소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얼마나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장애인의 교육권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노동부-대학 등과 연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된 다른 법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강력한 벌칙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진정을 이유로한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무렵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가 있었던 시기였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가 사립학교, 국가 및 지방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현재까지 인력과 예산은 담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한정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만으로는 조사 및 권리구제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와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보다 더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접근성과 신속한 사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도 꾸준히 제기 되어 왔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필요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부터 지역사무소의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진정사건의 현장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지역사무소 관내에서 교정시설과 정신보건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지역사무소 그리고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를 위하여 전담조사관 1명도 증원하여 조사 구제 업무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인권사무소가 한정된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관련 조례들과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들이 생겼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부설기관인 장애인차별상담 전화 평지를 운영하면서 권리구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지역인권사무소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상담, 모니터링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당사자와 관련자들간에 의사소통 지원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모든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구축된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과 시민단체의 권리구제 상담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장애인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6,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10~2015)
- 도경만,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3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자료집
- 이현수,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3주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추진방향, 토론회 자료집
- 전병운,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토론회 자료집
- 김기룡,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 도숙임, 2013, 경험으로 말하는 장애인 교육 현실 : 기대와 설렘 그러나 현실, 토론회 자료집
- 이현수, 2014, 교육환경에서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김성연,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한 권리옹호의 길, 토론회 자료집
- 김용목, 2015, 장애인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원칙 및 기준, 토론회 자료집
- 정현욱, 2015, 장애인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 토론회 자료집
- 홍길훈, 2015,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3\_ 장애인 교육관련 차별사례 및 개선의견  
**유·초·중등 교육 중심**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특수교육의 현장의 이야기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내 자녀의 장애를 통해 학년기를 보내면서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와 많은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빌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모든 장애학생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현실성 있게 교육현장에서 녹아나길 기대해 본다.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적어보고자 한다.

### 1. 체험학습에서의 배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담임교사께 전화가 오셨다. 수영체험학습을 가는데 00이도 갈수있을지 물으셨다. 부모는 당연히 체험학습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수영장에 안전 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잘 살핀다고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풀에 있으면 서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다.

부모는 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함께 동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오시면 다른 교사들도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부모의 말문을 막으셨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학기말이 되면 학예예술제를 많이 한다. 장애학생들은 예술제 기간 동안 원반에서 진행되는 예술제 준비에 배제가 되고 행사당일은 도움반에서 다른 학년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청각으로 본다. 함께 연습에 참여시키려 하지 않는다. 불편해 한다. 못할거라는 인식이 너무도 강하게 있다. 광산구에 한 부모님은 1학년 때 그런 예술제를 보시고 경험을 하신 뒤로 2학년부터는 예술제 당일엔 학교에 가질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학교를 안가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고 속이 덜 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렇다. 부모는 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동등한 관계가 되기보단 항상 장애자녀를 맡게 되는 분에게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혹여라도 내 자녀에게 불편함이 있을까봐 미움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응하기 보단 포기하고 마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 2. 통합수업의 배제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은 원반수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셨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습 도움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원반 시간표와 도움실 시간표를 정하여 통합교육을 하게 되어져 있다. 원반 시간표에는 주요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을 고려하여 도움실에서 개별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도움실에 내려오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도움실에 내려와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 하셨다.

원반시간 만큼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실무사 과건을 통하여든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장애학생의 수업태도와 행동을 이유로 도움반으로 요청하여 내려올 때가 많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렇다. 내 자녀의 중학교 수업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중학교 이상의 경우 교과목 마다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 장애학생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을 경우 장애학생은 이유도

모든 채 통합수업인 원반 수업에서 배제되고 도움실로 쫓겨 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 1항 2항에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다.

### 3.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과 개별화교육계획

학기 초만 되면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별화 교육팀 회의이다. 개별화 회의 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꼭 참여를 하여야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신다.

개별화 교육팀의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안내를 설명 받지 못한 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회의를 참석하게 되니 장애학생에게 맞는 개별화지원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될 리 없다.

학기 초 담임교사와 도움반 교사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있다 보니 장애학생에게 까지 세밀한 고민을 못하고 형식에 준하는 개별화교육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간담회로 진행이 되다보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필요성이 너무나 미흡하기 그지없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장이 미참석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보건교사 또한 미참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매 학기의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적합한 교육을 제공 받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지원팀을 구성하여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개별화교육에 대해 설명되어져 있다.

## 4. 특수교사 자질

2년 전에 3명의 학부모님이 사무실을 찾아 오셨다.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였다.

어느 날부터 최00이가(남)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짜증을 내며 학교생활을 아이가 너무 힘들어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몸무게가 2Kg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도움반을 함께 이용하는 엄마가 어느 날 최00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요즘 최00이가 특수교사에게 자주 혼나고 자로 맞고 벌을 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제보를 해준 엄마의 자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 였는데 학교생활의 모습을 엄마가 물어보면 조금씩 자주 표현을 하는 아이였다. 그 자녀의 증언이 사실인지 최00이엄마는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고 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자녀의 책가방에 있는 녹음기를 몇 시간 들어보니 도움반에 있을 동안 특수교사가 최00이에게 행한 욕설, 헐뜯, 괴롭힘 등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다.

그 녹음을 통하여 특수교사의 만행이 들어났다. 증거물을 제시하니 특수교사도 처음에는 거짓을 이야기 하다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요구는 그 교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교단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대응할 의지가 있었다.

바로 관할 지원청에 함께 가서 장학사와 면담을 하고 상황과약과 함께 조치 사항을 말씀 드린 적이 있었다. 최00 학생의 부모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제 2의 3의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장애학생의 특성상 말을 하지 못하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자폐성향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에 교원의 자질향상이 설명되어져 있다.

## 5. 특수학급 설치

한 학년씩 승급이 될 때 마다 부모의 한숨은 더더욱 늘어만 간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5학급까지 학급수가 설치되어진 학교도 있다.

이런 경우 개별화지원계획의 어려움, 실무사배치의 어려움, 한 학급당 인원배치의 초과 등 다양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설치의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시행령 제 11조, 제27조

설치기준, 시행령 제 22조에 설명되어 있다.

## 6. 전학을 요구하는 일

내 자녀의 이야기다. 공립 인문고등학교를 입학하고 2주가 되어 가는데 담임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장애정도가 생각했던 것 보다 심해서 매 수업 때마다 방해가 되고 이 학교를 진학한 다른 학생들은 대학을 가려고 온 것인데 면학분위기를 너무 망가뜨리고 있다고 직설로 말씀을 하셨다. 순간 멍 했다. 순간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움반 교사와 2시간 넘게 상담을 하였다. 학기 초에 일반적응 3주를 하지 않으면 장애학생들이 1년 동안 그 반 학생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반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힘든 것을 알지만 한 학생만 받아주게 되면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특수교사의 말씀이었다.

도움반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움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응기간 3주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꼭 지켜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게 되었다. 결국 우리아이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전학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아이에게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가 더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부모든 통합교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지 모를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학교를 전학 시켰다. 이런 일이 비단 나 혼자만 겪었던 일은 아니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차별행위에 설명되어져 있다.

## 7. 특수 실무사 배치

최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꽃도 피지도 못한 나이에 장애자녀가 하늘나라로 가나간 소풍을 가게 되었다. 그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특수학급이 2학급이 배치되어 있었다.

올해 신입생이 9명이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월에 개별화지원팀 회의를 할 때 교장선생님께 실무사 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수학급이 2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실무사 배치

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전에 신입생관련 등 정보가 없었거나 부모의 상담이 제대로 요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요구를 했으나 실무사 보조인력이 현재 없어서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의 설비를 제공하도록 되어져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져 있지만 교육의 현장에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배치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 해 반복되고 있다.

특수학급에 장애학생이 2명이 있는 곳에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고 20여명이 교육받고 있는 특수학급에서는 1명조차도 실무사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학교는 특수교사와 실무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수교사가 실무사요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특수교사와 실무사의 관계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통합교육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제 5조에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이 설명 되어져 있다.

## 8. 특수학교내의 방과 후 운영

특수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개설되어져 있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요일별로 여러 가지의 활동이 있었다. 난타부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방과 후 교사와 장애학생들이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북을 치고 있었다. 흥이 저절로 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떤 학생을 보게 되었다. 그 학생의 앞에는 어떤 도구도 악기도 있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모니터링이 끝나고 학교에 요구를 했다. 왜 그 학생은 악기도 도구도 없는 채 그냥 앉아 있는지, 악기가 고장 났거나 부족하다면 당연히 준비하여 제공해 줘야 한다고 요구를 하였다. 만약 그 학생이 소리에 민감하여 전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 학생은 난타부가 아닌 다른 방과 후 부서로 옮겨서 장애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서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을 보면서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의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8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 보다 더한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 장애는 있지만 동등한 교육, 인권, 권리로서 보장되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기대하고,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느낀다.

아울러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 장애인의 교육권 차별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 첫째, 입학거부나 전학강요금지, 편의제공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저절금지
- 둘째,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금지
- 셋째,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넷째, 입학 지원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이외에 추가서류 등에 대한 요구금지
- 다섯째,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 첫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 이동성 보장
- 둘째, 보조인력배치
- 셋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수행을 위해 학습보조기구 제공
- 넷째, 수화통역, 의사소통수단등 편의제공
- 다섯째, 학습진단을 통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 통합된 학급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때 성공적으로 실행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반학급의 수업내용이나 방법이 장애학생의 특성이나 능력수준에 맞게 수정되거나 첨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육 교사가 함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해 책임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적극적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하여 공통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 안에서의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학년기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제정되어진 법과는 달리 실천되어지는 부분은 극히 미비해 보인다. 여전히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이에 맞는 상담지원과 정당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의 입학 문턱은 어렵고 고등교육과정으로 갈수록 과밀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인해 국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온전히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가 아직은 미흡하다.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상황들을 통하여 눈높이에 맞는 개인별지원계획과 생애주기별 맞는 지원과 정책들이 계획적으로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진단, 상황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지원 전달 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특수교육현장이 더 바르게 다듬어져 가고 차별이 아닌 누구나 「대상에서 주체」가 될수 있는 교육과 사회현장이 되길 바래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3\_ 장애인 교육관련 차별사례 및 개선의견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중심

류니니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하라

류니니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나는 중국에서 살다가 200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년 후인 2006년 불의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척추의 신경손상으로 하반지 마비로 인해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이는 분의 소개로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립을 꿈꾸고 더욱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에서 중학교 정규과정 9년인데 국가의 특별정책으로 8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었다. 그래서 고등학교과정을 마치기 위해 성인학습자들이 다니는 풍암동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갈려고 했는데 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서 교실을 1층에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의 9년 동안의 학습과정은 인정은 해 주는데 8년 과정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의견이었다.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재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입학 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입학거부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어야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었던 시절, 나는 '학교에 가지 못 하고,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

결국 학교를 다니는 것을 포기했고 검정고시 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기위해 정말 힘들고 죽을지경이었다. 집에서 평생교육원까지 갈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가야 했는데 2009년에는 광주에 콜택시가 8대밖에 없어서 날마다 평생교육원 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였다.

그 때는 즉시콜 없어서 외출 하루 전, 오전 8시 정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해서 다음날 콜택시를 예약해야 했었다. 운이 따라주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되는 때가 많았다. 왜냐면 목적지로 가는 차가 예약이 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가 예약이 안되어 집에 되돌아가는데 힘들었다. 가는 차는 없고 집에 오는 차만 예약이 되거나 하는 상황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

어렵게 콜택시를 예약해서 평생교육원으로 가서, 3시간정도 공부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에 공부를 위해 평생교육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었다.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키우고 있다.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답답하고 공부를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비해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겨우 0.7%라고 한다.

헌법 31조에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의 문구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장애인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마저 받지 못한 장애성인에게 의무교육의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의 문구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이르기 위해서 모든 장애성인까지 의무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인 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부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차별이 아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고 이동은 삶 자체이다. 고용은 삶의 활력소이다.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되리라 본다.





## 중증장애인과 교육권 사례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교육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리 잡은 지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일까?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보다는 경험에 기초한 내용을 토대로 해결방안까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1. 유치원 과정

5세 때 진행성 근육병 진단을 받은 나는 유치원에 다녔다. 그때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어린 근육장애아를 둔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더군다나 내가 알기로 최근에는 비장애아동들도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추첨을 통해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자녀가 불치의 병이나 장애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시점에서 유치원을 알아본 결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집 근처에 장애아 유치원이 없어서 일반 유치원을 알아보아도 그 수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유치원에서의 차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겪어봤을 차별의 경험들, 유치원에서는 어떠할까?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이 아직 서투른 아이들이 더 취약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며 설마 아이들까지 차별하겠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2. 18.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권위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실태파악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6명(23.5%, 표 I-1)은 장애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231명(19.0%)은 인권 침해를, 114명(9.4%)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경험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I-1과 같다.

〈표 I -2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경험자 수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유형			전체(1,215명 중) n(%)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권 침해	폭력	구타	91(7.5)
		체벌	68(5.6)
		계(폭력 경험자 수)	124(10.2)
	성폭력	성폭력	8(0.7)
		성추행	8(0.7)
		계(성폭력 경험자 수)	8(0.7)
	언어폭력	희롱(놀림)	75(6.2)
		조롱(비하)	39(3.2)
		계(언어폭력 경험자 수)	84(6.9)
	괴롭힘	과도한장난	38(3.1)
		따돌림	60(4.9)
		계(괴롭힘 경험자 수)	81(6.7)
	사생활침해	초상권 침해	51(4.2)
		개인정보유출	24(2.0)
계(사생활침해 경험자 수)		61(5.0)	
교육적방임	장기결석방치	15(1.2)	
	교육적무관심	26(2.1)	
	계(교육적방임 경험자 수)	32(2.6)	
계(인권 침해 경험자 수)			231(19.0)
장애 차별	교육기회 차별	입학거부	31(2.6)
		전학 또는 분리교육강요	23(1.9)
		학업시수위반	13(1.1)
		교내활동배제	29(2.4)
		교외활동배제	36(3.0)
		계(교육기회차별 경험자 수)	64(5.3)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부	편의시설 설치 요구 거부	18(1.5)
		통학지원 요구 거부	37(3.1)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	49(4.0)
		보조기기 지원 요구 거부	24(2.0)
교수학습자료 요구 거부		29(2.4)	
계(편의제공 요청 거부 경험자 수)			77(6.3)
계(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경험자 수)			114(9.4)
전체(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경험자 수)			286(23.5)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구타가 91건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희롱 또한 75건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교사와 장애아동 사이에서 겪은 인권침해도 있지만 또래 아이들 간에 따돌림이나 희롱 구타 등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2014년 ebs 뉴스에션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870여 곳의 유치원 가운데 특수학급이 편성돼 있는 곳은 40곳,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국의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수는 3천3백여 명, 그러나 유치원 특수교사의 임용 정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특수학급이 적은 걸까?

손이 많이 가는 특수학급의 특성상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은 4명으로 한정돼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생 수만큼 지원금이 나오다보니 일반학급에 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2. 검정고시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3년 동안은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장애인 야학을 알게 되어서 다니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중고등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만약 장애인 야학을 알지 못했고 야학선생님들이 차량을 동원하여 통학을 지원해주지 못했거나 교육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3. 대학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할 말이 많은 부분이다.

2006년 나는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에 학습 도우미 제도가 생겨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동급생이나 친구들은 다른 과에 사람을 매칭해주는 제도 이다.

물론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더 힘들었지만 지금도 이 제도에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필기나 책장을 넘겨줄 수 없다. 시험시간에도 본인도 시험을 보아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혼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습도우미에게 일정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학습도우미를 한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장애인 화장실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화장실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애로였다.

강의실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다수의 논리로 장애학생에게 다른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대학교 입학시에 차별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육장애인의 경우도 각고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사이버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 등을 다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입학할 하여도 그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험시간도 장애를 감안하여 추가로 더 줄 것을 각 과목 교수님께 학생이 일일이 부탁을 해야만 한다.

#### \*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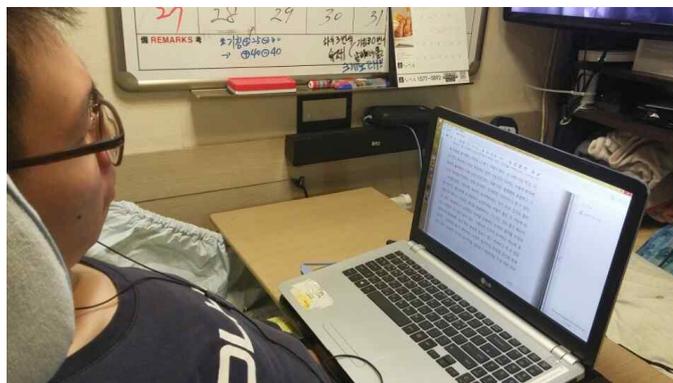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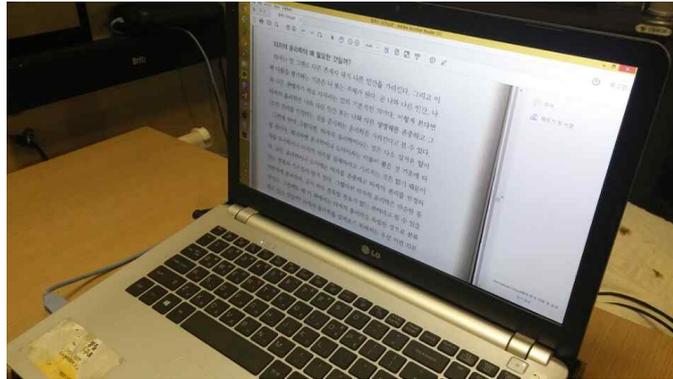
나이 : 28세

거주지 : 서울

장애 : 근육장애

학력 : 사이버 대학교 재학중





### 위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육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책장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500만원이 넘는 페이지 터너를 구하거나 책장을 넘겨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는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컴퓨터로 E-Book을 보거나 책을 구매하여 일일이 스캔을 해서 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

E-Book의 경우에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그 책의 수가 제한적이라 원하는 책을 볼 수 없다. 전공서적이거나 전문서적일 수록 그러하다.

아니면 500만원이 넘는 페이지 터너를 지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에

이러한 사업들이 국한되어 있어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2013년 6월 마라케시 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작권에 상관없이 텍스트로 된 파일을 받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책을 구입하여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몇 년 전까지는 전문 스캔업체에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스캔업 시장은 사장되었다.

결국에는 손수 직접 일일이 한페이지 한페이지 보호자나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개선의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스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책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지식을 스스로 성장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중증 장애인의 특성상 책을 본다는 것은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가 고가의 스캔 장비와 한 장씩 일일이 스캔을 하는 수고를 할 수는 없다.

## 지금의 틀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보자.

### 1. 교수와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공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정보가 없는 실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장애학생이 스스로 교수님께 먼저 접근하여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1) 사례로 예를 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필기를 할 수 없어 학습도우미에게 불러주는 대로 대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한다.
- 2) 필기를 할 수 있지만 손이 떨리거나 힘이 약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추가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여야 한다.

- 3) 수업시간에 장애학생 도우미가 함께 했을 때 수화통역이나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여야 하는데 수업에 방해된다며 제지하는 경우
- 4) 물리적 환경이나 엘리베이터 때문에 수업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 하여도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지각처리 하거나 결석처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장애학생은 교내에서 어떠한 틀이나 매뉴얼이 없이 막연하게 부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전국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과 교직원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대학교마다 설치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학습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 1) 안구마우스

손에 장애가 있어 누워서 생활해야만 하는 근육장애인의 경우 안구마우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안구마우스는 1천만원을 호가하는 매우 고가의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 2) 페이지 터너

앞서 언급되었던 책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기이다.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공서적과 교양서적들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 3) 센스리더기

센스리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명 낭독프로그램이다.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끄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소리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필수적이다. 힘들게 출판사에 텍스트 파일을 요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있다.

텍스트 파일을 받는다 하여도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낭독을 할 수 있다.

몇몇의 제품들은 국가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사용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 글을 작성하여 수많은 경쟁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몇 명의 소수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에도 신청절차까지 마무리 했으나 아직 수입이 안되었다며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권고 당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구를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방에 사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 3. 학습도우미제도를 개선한다.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을 학습도우미로 이용을 하면 당연히 그 학생의 비어있는 시간에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같은 시간표로 최대한 맞추어 듣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차라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활동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그것을 강화해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현재 활동보조제도는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장애학생이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3\_ 장애인 교육관련 차별사례 및 개선의견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정보접근권 중심**

**김동복**

도서출판 점자 대표, 前 광주세광학교 교사





##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오늘의 변화

김동복

도서출판 점자 대표, 前 광주세광고 교사

### I. 시작하며

어느 아침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앰허스트(Amhurst) 교사가 처음 방문하는 학교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면서 ‘좋아’라고 생각했다. “만디(Mandy)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걸어들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는 눈부심이나 햇볕에 피부가 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만디는 눈과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학생인데, 이 안질환은 태양과 자외선 그리고 불빛과 섬광에 극히 민감하다. 만디는 총명하고, 운동도 잘하며, 명랑했으나 눈부심을 줄이기 위하여 거의 항상 선글라스를 써야 했고, 햇볕에 타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로 처리된 촘촘하게 짠 천으로 가려야 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만디는 중학생이고, 수영 선수로 여름 날씨의 조건과 연습 장소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여름 그녀의 수영팀이 이른 아침에 연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실외 수영장을 사용했다. 만디의 코치는 오후 연습을 위해 최소한 얼마 동안 고등학교 실내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훌륭한 시각장애학생의 교사인 앰허스트는 그녀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자료를 꺼내면서 만디의 IEP 팀은 자신이 IEP 회의를 주관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앰허스트 교사와 교장 선생님은 함께 발표할 내용을 작성했다. 만디는 IEP 회의가 시작될 때 백색증이 어떤 질환인가를 설명하여 교사와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백색증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녀는 봄방학 중에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했고, 그 내용은 앰허스트 교사가 제안한 바에 따라 만디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앰허스트 교사가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시작한 만디 가족의 의료

기록부에 기초를 두었다. 앰허스트 교사는 만디가 자신의 안질환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만디의 부모는 IEP 회의에 참석하여 수영반에 참가하는 것, 운동과 학습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읽기과제를 마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에 관하여 질문했다. 만디의 부모는 만디에 관하여 작성했으나 그녀를 독립적이고 신중한 아동이 되도록 도왔다.

햄허스트 교사는 “내가 대학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배우지 않았던가?”라고 자문했고, “눈의 해부와 생리라는 과목이 출발점이었으나 태도, 기대, 경험, 그리고 목적이 구체화 될 때 그 내용은 눈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녀는 “오늘 아침은 우리에게 똑똑하고 설명을 잘하는 학생, 신중하고 마음이 넓은 부모, 지원을 잘하는 교육청,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인 교사가 있어 즐겁고 비는 그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처리하는데 필요한 질문과 계획에 미칠 가능한 모든 견해를 필요로 한다. 내가 아는 만디는 그녀에게 매우 많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작년 9월 우리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 발표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학생의 교육분야에 대한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2015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특수교육대상자수		25,531 (29.9%)	46,351 (52.6%)	15,622 (17.8%)	61,973 (70.4%)	563 (0.6%)	88,067 (100%)
장애 영역	시각장애	1,353 (64.8%)	291 (14.0%)	435 (20.9%)	726 (34.9%)	9 (0.3)	2,088 (100%)
	청각장애	952 (27.3%)	765 (21.9%)	1,752 (50.2%)	2,517 (72.1%)	22 (0.6%)	3,491 (100%)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있어서 61,973명으로 70.4%가 배치되어 있다. 시각장애학생은 평균 이하의 726명으로 34.9%로 통합교육률이 평균이하이나 청각장애학생은 2,517명, 72.1%로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시각장애학생이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보다 통합교육률이 절반 이하로 저조한 편이다.

### 2. 교육 차별 사례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로는 수업시간 방치와 같은 교육적 방임 행위와 교내외 수업활동 배제와 같은 교육기회차별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 방치와 같은 교육적 방임 이외에도 장애학생은 수업, 교내 활동 및 학교밖 활동 등에 대해서도 참여를 배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차별 유형으로는 교내외 활동 배제, 시험참여배제, 분리교육 강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은 12.5%로 조사됐으며,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 29.9%가 교육편의 미제공을 들었다.

#### 1) 학교 차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학교 차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면, 정당한 편의제공 이용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에 참여와 활동을 위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도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를 장애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전담부서 및 담당자가 없어 수요과약,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에 교육비, 통학비, 급식비, 치료지원비, 방과후교육비 등의 기초적인 요구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어, 적절한 편의 제공이 어려움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에게 대독대필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듣기평가를 생략하거나 자막 및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2)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교사의 경우 장애학생에게 어떠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어떠한 수업 방법으로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사 역시 통합학급에서의 일반교사의 수업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시각장애학교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검인정 교과서를 보급 받지 못하고, 전국시각장애학교의 단합(다수결)으로 결정하여 점자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시각장애학생들에게는 확대교과서가 보급되고 있으나, 시각장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EBS교재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반학생들이 제공 받는 시기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게 보급 받고 있다.

## 3) 장애학생을 위한 검사조정

장애학생은 시험 응시 또는 평가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장애를 고려한 수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사조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검사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구축하여야 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점자 및 확대시험지는 편의제공을 받고 있으나 전국 시도단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교내 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시 시험지제작, 시간연장, 별도시험실 운영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 000 국회의원 요구자료

###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장애인 차별 시정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서면답변-

#### 가. 장애유형별 전국연합학력평가(고3) 응시현황 및 시행 방법

장애 유형	학교명	3학년 학생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현황				수능 응시자수	시행방법
			3월	4월	7월	10월		
저시력	A	10	12	·	12	·	12	문제지 자체 제작하여 추후 실시(1.5배 시간 부여)
	B	5	·	·	·	·	1	
	C	1	1	1	1	1	1	일반 문제지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응시
	D	1	1	1	1	1	1	특수교육보조원이 문제를 읽어주고 1.5배 시간 부여
	E	1	·	·	·	·	1	교실의 확대경을 이용하여 수업에만 활용
맹인	F	9	10	·	10	·	13	점자, 음성 문제지 자체 제작하여 추후 실시(1.7배 시간 부여)
	G	9	·	·	·	·	2	
청각장애	H	31	·	·	·	·	9	낮은 성취수준으로 학업 의욕저하가 우려되어 미응시
	I	9	·	·	·	·	1	
	J	14	·	13	·	·	4	듣기평가 대본을 자체 제작하여 평가 실시
	K	1	1	1	1	1	1	듣기평가 대본을 자체 제작하여 평가 실시
	L	2	2	2	2	2	2	"
	M	2	2	2	2	2	2	"
	N	1	1	1	1	1	1	듣기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만 응시
O	2	2	2	2	2	2	"	
뇌병변	P	1	1	1	1	1	1	통합학급에서 타 학생과 동일하게 실시
	Q	1	1	1	1	1	1	별도 교실에서 답안지 이기요원을 배치하고 실시
	R	1	·	·	·	1	1	특수교육 전공자를 배치하고 실시
지체 부자유자	S	2	2	2	2	2	2	별도교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실시
	T	1	1	1	1	1	1	일반 문제지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응시
계		104	37	28	37	16	59	

## 나. 시·도교육청 서면 답변(광주광역시교육청)

-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모의평가 등과 관련하여 맹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사건 이후, 장애인의 요구가 수용되어 2011학년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문제지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문항 출제 및 성적처리 비용을 공동 분담하고 4개 주관 교육청(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문제지는 각 교육청 별로 인쇄하여 시행함
  - 특수학교의 경우, 저시력용 문제지는 해당 학생에 맞는 문제지를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맹인용 점자 문제지 등은 여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점역하여 추후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현재 주관 교육청에서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나 주관 교육청의 단독적인 노력으로 장애유형별 문제지까지 추가 제작하기에는 인적·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시·도 교육청 연합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적·재정적 규모를 늘려야 하며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연합(연 12회) 문제에 대하여 장애 유형별 문제지를 모두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이 1년 내내 문제지 제작에 얽매이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과학기술부와 특수학교 담당 교사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장애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음

### 3. 정보접근권 실태

각각장애인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특히 보고 얻는 정보에 차단되어 있어 청각 및 촉각 중심의 지식으로 외부의 정보를 획득하므로 비시각장애인들과는 다른 방식의 외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장애유형별·동일한 장애유형에도 정도에 따라 다양화되어 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 및 지식제공의 필요성은 도서 및 교과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 문화생활, 사법 행정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198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에도 이러한 의미의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정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적절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 있으며, 이 책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으로 정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정보를 보급하는 활동은 가장 적절한 정보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아·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위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삶은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생활은 사회와 격리되어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65조 4항)에서는 대통령선거, 지역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연구 결과, 2015년 4월에서 9월까지 12개 지역 및 중앙부처 행사 개최 수는 총 67건으로 그 중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대체자료 제공 수는 단 6건으로

9%에 불과하다. 이 중 장애인 복지법상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공 의무 행사는 47건, 대체자료 제공 수는 5건으로 10%로 불과하다. 심지어 제공된 5건조차 장애인들의 참여가 많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날에 4건이 몰려 있어 여타의 다른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대체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경일·경축일을 제외한 기타 문화행사는 전체 시민대상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에 의해 개최된 것에 한해 12개 지역 및 중앙부처행사 22개를 모니터링 하였다. 지역 축제 및 행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문화·여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22개의 행사 모니터링 결과 단 1건의 시각장애인 대체자료가 제공되어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건의 대체자료조차 ‘2015년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때 제공된 것으로 행사 주 대상이 시각장애인 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법률적 의무사항인지 알지 못해서’가 27.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17.4%), ‘대체자료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서’(15.1%),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13.7%), ‘시각장애인의 참여를 예상하지 못해서’(13.7%),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9.1%),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행사 주최측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을 살펴본 결과, 82.6%의 시도 자치단체에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화장품법이 유일하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는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제10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약품, 가전제품, 식료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점자 또는 양각 표기를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이 각종 가전제품 및 공산품 등을 자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일부 임료 용기나 샴푸와 같은 세정제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Ⅲ. 마무리하며

교육기회 차별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로부터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당했을 때 이를 장애인 차별로 인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기회 차별로부터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및 제38조(진정)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 및 진정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차별 행위의 유형, 장애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 또는 안내 자료를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언

##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교육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여덟 번째 해가 되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목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법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지에 힘을 주는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당사자 및 우리 사회 전체의 장애인 및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법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김성연, 2015).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 교육권 보호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 참정권과 문화향유 등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기도 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나 한계로 인한 관련된 법률과의 상충이나 시행 상 드러나는 한계점 등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보장된 장애인의 교육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으

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및 호주 등의 장애인차별 관련법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실제로 지난 한 해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건수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양상을 살펴본다. 이 후 장애인 교육권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애주기별로 고찰해보려 한다.

## 1. 한국 및 주요국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 (1) 한국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입학거부 및 전학 강요·거절, 그리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과 보호자(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은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는 첫째,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제공, 둘째,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 셋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등의 제공, 넷째,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의무 교육화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의 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수업참여 및 교내의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차별한 자,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2) 미국

미국장애인법상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유아원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어떤 개인도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 편의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공공시설의 차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이 공공시설의 재화 및 서비스, 시설, 편의 등을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차단하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장애인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적용된 수정사항이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차상 방법이나 유형 등의 수정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보조시설이나 보조서비스의 제공이 본질을 변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보조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혹은 서비스를 거부당하거나 분리되는 등 타인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및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RA)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첫째, 교사 및 부모, 필요 시 학생까지 특수교육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개별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된다. 둘째, 연방정부의 산하 기관들은 시행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규(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조 및 개조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은 각자의 법규를 집행할 책임이 있고, 재활법 제504조는 문제가 있을 시 개인 소송으로도 집행될 수 있다.

## (3) 호주

호주의 장애차별법은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TAFE(주립기술전문대학) 및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장애인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자들의 결정은 반드시 학생이 학업의 필수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 장애차별법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입학의 경우 장애인의 지원서 수리를 거절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을 더 높게 부과한다든지 하는 등 타인보다 불리한 조건 하에 장애인을

입학시키는 것을 금한다. 둘째, 접근권과 관련하여 여행 및 학교 스포츠에의 참가를 못하게 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 등 장애인들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셋째, 괴롭힘에서, 모욕이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소문 및 행동 등 장애에 관한 굴욕적인 소문이나 행동 역시 장애인 차별로 간주하여 이를 엄격히 금한다.

장애차별법은 어떤 편의제공 사항이 심각한 어려움이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때는 예외적으로 그 편의제공의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수용하여 그 어려움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입증되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는 조건하에 받아들여 진다. 첫째, 조정 사항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지 철저히 고려했을 때이고, 둘째, 당사자와 직접 논의했을 때이며, 셋째, 적절한 조언을 구했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 2.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교육권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타 영역에 비해 교육 영역의 진정건수는 크게 높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외 최근 제정 혹은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의해 문제의 상당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해결되었을 가능성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진정사건으로 까지 진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발달	언어	정신	기타
소계	8,824	2773	1963	640	1044	1044	66	362	932
교육	489	68	78	51	55	166	4	11	56
재화·용역 일반	1,313	451	232	153	91	210	11	53	112
정보통신·의사소통	1,400	33	900	17	317	26	4	1	102
괴롭힘 등	1,086	279	64	106	202	196	12	128	99

진정사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정사건이 많이 접수된 타 영역과 비교할 때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의 진정건수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진정건수 비율이 높은 타 영역의 경우,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의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나 교육 영역에서 만큼은 지적·발달장애의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15	접수	1,142	69	55	729	126	82	124	99	286	12	37	121	131
	비율	100.0	6.0	4.8	63.8	11.0	7.2	10.9	8.7	25.0	1.1	3.2	10.6	11.5

교육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차별행위로는 수업 및 시험평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괴롭힘이며, 전·입학 거부제한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배제와 직접적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계	합계	489	68	52	92	39	85	32	121
	비율	100.0	13.9	10.6	18.8	8.0	17.4	6.5	24.7
	공공	334	29	28	46	28	82	26	95
	민간	155	39	24	46	11	3	6	26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접수된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 괴롭힘에서 진정제기 이후 취하하거나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동시에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합의나 조사 중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승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8,367	4,135	353	2	325	2,122	1,333	4,178 (2,915)	16	38
	비율(%)	100.0	100.0	67.8				32.2			
				49.4					49.9	0.2	0.5
교육	건수	471	216	12	-	35	119	51	251 (211)	-	3
	비율(%)	100.0	100.0	76.5				23.6			
				46.1					53.3	-	0.6
괴롭 힘 등	건수	1,763	523	22	-	75	115	311	1,209 (690)	3	28
	비율(%)	100.0	100.0	40.5				59.4			
				29.7					68.5	0.2	1.6

### 3. 생애주기를 통해 본 교육권 관련 문제 및 해결을 위한 고려점

#### (1) 장애 영유아<sup>1)</sup>

2015년에 발행된 “장애 영유아 교육권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권과 관련된 장애 영유아의 문제는 장애의 조기발견 문제,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 제한, 유아특수교사의 수적 부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개별화교육의 질 낮은 운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본 절은 2015년도에 발간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우선,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장애 영유아 자녀 부모들은 장애인 등록 이후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정보 획득, 기관 의뢰 등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기발견과 중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책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한 비용 지원(21.2%) 및 체계 구축(14.9%), 그리고 조기 진단을 위한 도구 개발(17.1)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눈에 띈다.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은 장애아동의 교육적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의 무상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장애진단을 받은 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이를 조정하고 정확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연계해주는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부재는 장애 영유아에게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장애 영유아의 장애발견과 진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되어 있는 이유로 조기발견 및 진단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조정·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에 한 기존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부처의 거점기관이 되어 진단과 의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최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기존의 센터들을 통합·운영하여 조기발견 및 진단·의뢰·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기관 확보를 통한 서비스제공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장애영유아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및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부재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한다든지,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의 수를 증설하고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며, 그리고 의무교육 간주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수의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 수준의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어린이집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 집을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으로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교육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심화 현상이다. 이 같은 교육 환경의 격차는 통합교육 실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및 특수교사 연봉액,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지원금, 급식비, 통학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애아 어린이 집에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는 어린이집과 유아특수교육기관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관 간의 교육 환경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각 시설 및 기관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공통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조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서비스 요구의 거부 경험을 호소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 사건의 발생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는 치료지원과 가족지원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지원 및 보조인력 지원, 보조기기 지원, 정보접근 지원과 같은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내용이나 특수교육법의 관련 서비스 유형에 포함된 서비스이기도 하다. 반면, 보조건의 배치 및 휠체어 접근 공간의 확보, 적절한 교육 제공, 교수학습 지도자료 제공, 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치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가족지원 및 치료지원 등은 특수교육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 내용의 차이는 언급한 교육기관 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의 편의제공 범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편의제공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화교육의 낮은 만족도 문제를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와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방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등을 소폭 수정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학부모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팀회의 운영을 매뉴얼화하여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그리고 학부모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2) 학령기 장애학생<sup>2)</sup>

2014년에 실시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주로 발생되고 있는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 유형으로는 교내외 활동배제, 시험참여 배제, 분리교육 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질문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교육기회의 차별은 여전히 교육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통합학급에서도 역시 장애학생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차별로부터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기회 차별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및 제38조(진정), 그리고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및 제 36조(고등학교 과정이하의 심사청구)등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 및 진정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장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 및 학습도움실 같은 장소나 승강기 및 보조공학기기 같은 설비 등에 장애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와 스티커 등을 부착·배치해두어야 할 것이다.

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사건이나 성폭력 사건과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경우 피해입증이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2) 본 절은 2014년도 실시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것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의사소통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조사에서는 학교폭력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조력 신청권 부여,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체계 구축,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에 장애 관련 인사 포함 등이 필요하고 동시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의사소통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이는 사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일환이므로 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 같은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조력을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관련자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동행한 경우, 이 사람을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심영진, 2013)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장애학생의 문제로 드러나는 또 하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와 같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효성 담보문제이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다수와 심층면접 대상자의 다수는 개별화교육계획의 형식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조사에서 제안한 것처럼,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효성 담보는 국가차원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필요아동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on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Special Education Needs)을 실행하여 의견이 합의되지 않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차와 3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체계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역시 교육에서의 장애 기준(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도 부문별 서신 혹은 지침 등을 가지고 있어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수준의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위한 팀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향상법」에서 장애학생이 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연령대인 14세 이상이 되면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지적 제한이 없는 장애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형 및 학교

생활 참여 제고에 관한 스스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참여 학생의 장기적 역량제고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장애성인

지금까지의 장애운동 및 장애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학령기 이후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지원으로, 특수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평생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재교구 등 시범 운영 역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큼 실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지원 역시 미비한 형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달체계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중앙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거점을 국립특수 교육원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장애인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전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성인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 취업 및 주거와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가족 등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생활, 직업재활 모두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민간단체, 가족들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평생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급하였듯이 평생교육지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소수의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다수이나 다양한 시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4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나 장애인기관의 바리스타 교육, 원예치료, 재활운동, 기존 프로그램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문해교육과 인지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새로운 영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의 선택권과 접근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공신력과 대학기반의 질 높은 환경구성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김성태, 2014). 한 예로, 대구대학교의 K-PACE(Professional Assistant Center for Education),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교육원 프로그램,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한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호산나대학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1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1개 기관, 84종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조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제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 및 위탁(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 설치(제7조)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 예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업능력교육,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다양한 e-러닝 동영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센터 내 법률 상담, 결혼 및 의료 등에 대한 자문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법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부모연대가 주장해온 것처럼,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여 미래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도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두어, 시·도지사는 '시·도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도 중요할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 장애의 이해 등을 돕는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역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편의 시설 및 서비스제공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권 관련 문제 및 해결점을 장애인차별 관련 법개정의 측면에서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1) 장차법과 관련법들에서의 보장 및 지원 내용 조정

장애영유아 및 장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에서의 지원의 내용에 있어 서로의 연관성을 보장하고 지원의 내용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내용과 특수교육법의 관련 서비스 유형에 포함된 서비스가 서로의 관련성을 가지고 범시행에 있어 강화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장차법과 관련법들에서의 처벌조항의 형평성 조정

법내용 보장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관련법들에서의 처벌의 수위 역시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발표문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된 다른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만큼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시급한 법개정 및 기존법의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 영유아 및 장애학생, 그리고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져 장애인차별 방지 및 권리 보호의 과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

법 및 관련법들이 더욱 실효성 높게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도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문제는 장애인 교육권의 수업에서의 배제, 학습과정에서의 배제, 개별화교육계획의 피상성,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 전문가 질 담보, 보조인력의 부족 등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편의제공 및 이의 보장을 위한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현실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및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역할 수정 등 실효성 높은 담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15),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

서울시 장애인부모회(20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부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9.] [법률 제12365호, 2014.1.2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

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16.8.4.] 제3조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1조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4조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0조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시행일 : 2016.8.4.] 제21조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3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이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2365호, 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

---

| 인 쇄 | 2016년 4월

| 발 행 | 2016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주 소 |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주)아모레퍼시픽 5층

| 전 화 | (062) 710-9714 | F A X | (062)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978-89-6114-492-6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  
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